

2024-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(우선지급 분야) 절차 및 주요내용 요약

※ STEP-1 ~ STEP-4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. (서류 미비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됨)

※ 자세한 사항은 2024-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(우선지급 분야)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참조 바랍니다.

| STEP-1 | 자격 요건 확인 | <p>1. 신청분야 (1개만 선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(2명 모두 국내 대학 재학생만 지원) ② 다자녀 (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) ③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(2024. 1. 1. ~ 2024. 4. 30. 기간 중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, 서류 발급일 현재도 여전히 실직·폐업상태 유지) ④ 부모가 폐업 (2024. 1. 1. ~ 2024. 4. 30. 기간 중 부모가 폐업, 서류 발급일 현재도 여전히 실직·폐업상태 유지) <p>2. 주요 자격요건 (2024-1학기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024-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74 808 1417 931"> <thead> <tr> <th>소득구간</th> <th>지원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구간 ~ 8구간</td> <td>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심사기준 통과 ③ 2024-1학기 등록금 완납자 등 <p>※ 자세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 반드시 참조</p> | 소득구간 | 지원대상 | 0구간 ~ 8구간 |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소득구간 | 지원대상 | | | | | |
| 0구간 ~ 8구간 |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| | | | | |
| STEP-2 |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(http://portal.inu.ac.kr) | <p>1. 기간 : 2024. 5. 20.(월) 9시 ~ 2024. 5. 31.(금) 16시</p> <p>2. 신청 : 인천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지급 분야신청</p> | | | | |
| STEP-3 | 신청서 출력 (프린트) | <p>1. 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(프린트)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(제출방법 STEP-4 참조)</p> | | | | |
| STEP-4 | <p>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서류는 2024. 5. 16.(목)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로 제출 (※ FAX, 복사 등 자료는 불인정) ○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* 처리 (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) </div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출서류: 신청 안내문 참조 2. 제출방법: 인천대 학생지원과 방문 제출 (17호관 214호) 3. 제출기간: 2024. 5. 20.(월) ~ 2024. 5. 31.(금) (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) 4. 접수시간: (오전) 9시 ~ 11시 (오후) 14시 ~ 16시 5. 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 불가 | | | | |

※ 본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장학금으로 오(誤) 선발 및 장학금 오(誤) 지급시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학생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해진 기한내 반환하여야 함

※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, 장학금 오(誤) 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한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